

1996. 9.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1. 심 사 경 위 .....	29
2. 제안설명 요지 .....	29
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29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 .....	30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 .....	31
3.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	32
4. 채권·채무 결산 .....	33
5. 재산결산 .....	34
6. 기금결산 .....	35
7. 금고결산 .....	37
8. 검토보고요지 .....	38
9. 주요지적사항 .....	43
10. 심 사 결 과 .....	43
11. 소수의견요지 .....	43
12. 기타 필요한 사항 .....	43

#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9. 2.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6. 9. 18

다. 상 정 일 자 :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 9. 19) 상정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박 경 국)

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세 결 산 입 액 ②	세 결 산 출 액 ③	세 계 잉 여 금
합 계	946,079,354	978,547,267	816,009,879	162,537,388
일 반 회 계	666,697,152	701,026,590	588,437,378	112,589,212
특 별 회 계	279,382,202	277,520,677	227,572,501	49,948,176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67,558,142	139,880,815	27,677,327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7,462,663	65,653,888	21,808,775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7,264,176	16,857,272	406,904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323,626	3,323,626	3,270,000	53,626
대청호대책	1,910,526	1,912,070	1,910,526	1,544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징 결 정 수 액 ②	수 납 액 ③	불 결 손 납 액 ④	미수납액
합 계	946,079,354	998,099,835	978,547,267	331,820	19,220,748
일반 회 계	666,697,152	720,361,958	701,026,590	331,820	19,003,548
특 별 회 계	279,382,202	277,737,877	277,520,677		217,200
- 공 기 업	256,882,564	255,238,005	255,020,805		217,200
·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67,775,342	167,558,142		217,200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87,462,663	87,462,663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7,264,175	17,264,176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323,626	3,323,626	3,323,626		
- 대청호대책	1,910,526	1,912,071	1,912,07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9,460억 7,935만 4천원 대비 105.4%인 9,980억 9,985만 5천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미수납액 192억 2,074만 8천원은 일반회계가 98.8%인 190억 354만 8천원, 특별회계가 2억 1,720만원으로 1.2%임.
- 불납결손액 3억 3,182만원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3억 3,182만원, 특별회계는 없음.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 출 액 ③	다음년도 이 월 액 ④	불 용 액
합 계	946,079,354	871,860,533	816,009,879	87,326,155	42,743,320
일반 회 계	666,697,152	637,631,282	588,437,378	63,489,803	14,769,971
특별 회 계	279,382,202	234,229,251	227,572,501	23,836,352	27,973,349
- 공 기 업	256,882,564	212,191,453	205,534,703	23,836,352	27,511,509
· 공영개발사업	172,808,042	146,537,564	139,880,815	23,836,352	9,090,875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65,653,889	65,653,889	-	18,420,634
- 의료보호기금	17,265,486	16,857,272	16,857,272	-	408,214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323,626	3,270,000	3,270,000	-	53,626
- 대청호대책	1,910,526	1,910,526	1,910,526	-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9,460억 7,935만 4천원 대비 평균 86.3%인 8,160억 987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88.3%,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81.5%임.
- 예산현액이 전년도('94)보다 전체 1,772억 6,958만 8천원,  
(일반회계 1,245억 4,634만 6천원, 특별회계 527억 2,324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율도 16.6%(일반회계 1.4%, 특별회계 53%)가 증가하였음.

### 3.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 (1) 일반 회 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47건에 634억 8,980만 3천원으로서

- 계 속 비 :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비 30억원
- 명시이월비 : 농촌진흥원 이전에 따른 토지 협의 매수지연등 7개 사업에 112억 9,744만 8천원
- 사고이월비 : 설계공기부족에 따른 공무원 교육원 청사 신축공사의 39개 사업 491억 9,235만 5천원임.

#### (2) 특 별 회 계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건에 238억 3,635만 2천원으로서,

- 계 속 비 : 1건에 163억 2,111만 2천원
- 명시이월비 : 3건에 68억 7,685만 8천원
- 사고이월비 : 1건에 6억 3,838만 2천원임.

#### 4. 채권·채무결산

##### (1) 채권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95년 발생	'95년 소멸	당해년도말현재액
합 계	193,263,121	81,630,536	29,986,144	244,907,513
일반 회 계	14,209,820	17,949,460	11,157,862	21,011,398
특별 회 계	179,053,321	63,681,076	18,828,282	223,906,115

##### (2) 채무증감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94말 잔액	'95년 발생액	소 계	'95 상환액	'95말 잔액
합 계	209,627,467	140,311,649	349,939,116	35,533,392	316,405,724
지 방 채	198,605,729	132,531,001	331,136,730	24,708,180	306,428,550
채무부담행위	7,000,000	7,000,000	14,000,000	7,000,000	7,000,000
해 의 차 관	4,021,738	780,648	4,802,386	1,825,212	2,977,174

## 5. 재산결산

### (1)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95 증 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94,506,511	276,638,616	23,163,221	347,981,906
행정예산	83,524,979	227,416,905	19,875,679	291,066,205
공공용재산	43,316,457	40,489,483	1,162,299	82,643,641
공용재산	36,578,476	166,995,669	17,485,559	186,088,586
기업용재산	3,630,046	19,931,753	1,227,821	22,333,978
보존재산	4,501	17,364	-	21,865
잡종재산	10,977,031	49,204,347	3,287,542	56,893,836

### (2) 물품조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정수	전년도말 보유현액	당해년도 증감실정		
			취득	처분	보유현황
수량(점)	5,456	3,532	367	91	3,808
가액(천원)		22,382,543	3,535,633	467,635	25,405,541

-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서, 동법 제104조(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작성등)에 따라 1995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보고한 내용임.



# 6. 기금 결산

## ○ 적립기금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5년도 사 용 액	'95년도말 현 재 액	근 거
	'94년까지	'95년도분	계			
계	26,137,800	30,518,018	56,655,818	28,965,437	27,690,381	
문화예술 진흥기금	4,296,553	682,775	4,979,328	0	4,979,328	도문예진흥기금 조성설치운영조례
생활보호 기금	66,543	7,627	74,170	0	74,170	생보법 제37조 및 도운영관리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802,017	358,811	1,160,828	158,811	1,002,017	도저소득주민자 녀장학금지급조례
재해구호 기금	3,937,628	1,165,547	5,103,175	85,951	5,017,224	재해구호법 제15조
청소년자 립기금	90,635	17,025	107,660	0	107,660	도청소년지원사 업운영관리조례
청소년장 학기금	21,283	4,276	25,559	3,600	21,959	도청소년지원사 업운영관리조례
중소기업 운전자금	2,647,050	263,253	2,910,303	2,910,303	0	도중소기업운전 자금조례
자동차 운수사업 발전기금	3,106,655	306,563	3,413,218	364,000	3,049,218	도자동차운수사 업법 제31조의2 규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5,614,787	24,200,064	29,814,851	25,367,170	4,447,681	도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조례
노인복지 기금	0	218,471	218,471	0	218,471	노인복지법 제4조
식품진흥 기금	2,791,577	1,230,445	4,022,022	75,602	3,946,420	식품위생법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금	2,652,786	2,032,204	4,684,990	0	4,684,990	도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영 조례
중평출장소	(110,286)	(30,957)	(141,243)	0	(141,243)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적립액			'95년도	'95년도말	근거
	'94년까지	'95년도분	계	사 용 액	현 재 액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98,888	29,781	128,669	0	128,669	본청분과 동일
청소년자립 지원 기금	11,398	1,176	12,574	0	12,574	본청분과 동일

○ 상기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잔액증명과 상이없이 금융기관에  
에치되어 있음.

## 7. 금고결산

### ○ 잉여금처분 내역

구분 회계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잉여금처분		
				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978,547,267	816,009,879	162,537,388	87,326,155	310,816	74,900,417
일반회계	701,026,590	588,437,378	112,589,212	63,489,803	310,816	48,788,593
특별 회 계	소계	277,520,677	227,572,501	49,948,176	23,836,352	26,111,824
	의료보 호기금	17,264,176	16,857,272	406,904		406,904
	농어촌 개발	3,323,626	3,270,000	53,626		53,526
	대청호 대책	1,912,070	1,910,526	1,544		1,544
	공영 개발	167,558,142	139,880,815	27,677,327	23,836,352	3,840,975
	지역개 발기금	87,462,663	65,653,888	21,808,775		21,808,775

### ○ 일반회계

- 총수입액이 7,017억 6,364만 7천원이었으나 과오납금 7억 3,707만 5천원을 반환하고 실수납액은 7,010억 2,659만원이었고,
- 총 지출액은 5,900억 2,501만 9천원이었으나 지출금액중 15억 8,764만 1천원을 반납받음으로써 실지급액은 5,884억 3,737만 8천원으로 1,125억 8,921만 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 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의 4건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775억 2,067만 7천원이었고, 총세출결산액은 2,275억 7,250만 1천원으로 499억 4,817만 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8. 검토보고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우 병 수 )

### - 세입부분

#### < 일반회계 >

예산현액 6,666억 9,715만 2천원의 105.1%인 7,010억 2,659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3,578억 5,945만원으로 53.6%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할 수 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서 43.1% 세외수입에서 목표액보다 9.1%나 초과징수하였는바, 이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으나 몇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 1. 지방세 예산과소 추계 및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세 목표액이 1,360억 5백만원 대비 1,762억 5,291만 2천원을 수납하여 402억 4,791만 2천원을 초과징수한 것은 위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수증대 노력때문이기도 하나,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결과로 볼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초과 징수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최근 3년간의 체납액은 매년 감소되고 있어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액보다 683억 8,631만 8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 586억 2,519만 2천원, 세외수입 97억 6,085만 6천원으로

이는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징수결정액중에는 주소불명,

징수유예, 채무자능력부족, 납세자 태만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지방세에서 63억 3,290만 1천원, 세외수입에서 3억 786만 4천원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지나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체납액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체납액의 원인을 정밀분석하는등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3. 징수교부금 교부지연

초과 징수된 세입금에 대한 시군징수교부금을 4/4 분기후 출납폐쇄기한내 불가피 하게 징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교부하여야 하나 이월하여 익년도에 교부한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당년도 예산으로 교부토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4. 정산잔액 여입 부적합.

'95년도 4대 지방선거중 도지사, 도의회의원선거관련 예산중 충청북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교부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정산잔액 6억 3,986만 2천원을 반납함에 있어 년도내의 반납금은 해당세출과목으로 여입하여야 함에도 잡수입 과목으로 세입조치한 후 다시 해당 세출과목으로 여입하는등 세출예산정산잔액 여입과정을 부적합하게 처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 세출부분

### 1. 계속비제도 미활용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은 그 총액과 년부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성IC ~ 금왕 도로포장 공사의 3건의 사업은 '95년도에 시행하여 2~4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공사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 급 내 용	
				'95년도	'95년이후
계			103,250	20,265	83,255
추정-미원도로 포장공사	1.4km	95~2000	15,030	4,224	10,806
음성IC-금왕 도로포장공사	11.7km	95~2000	35,100	9,223	25,877
오창-중평IC	12.1km	95~2000	39,300	1,827	37,473
중평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30,000 T/D	95~97	14,090	4,999	9,099

### 2. 불용액 발생 최소화

'95년도 예산액 6,666억 9,715만 2천원중 불용액은 예산액의 2.2%인 147억 6,997만 1천원이며 불용액중 예산계상후 전액 불용처리한 농촌진흥원 단양마늘시험장 무연경보시설과 행정전화 청약비 315만 1천원등 7건은 여건변동, 계획의 변경취소등 불용사유가 예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치 못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역개발사업등으로 활용하는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3. 설계소홀로 인한 계약변경과다

모든 시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완벽하게 설계한 후 발주하므로 공사시공중 설계변경등으로 예산을 추가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공사 29건에 대하여 설계변경하므로 18억 2,100만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한 것은 설계심사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4. 사고이월 및 계약공기 설정 부적정

시설공사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사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기간이 불가피하게 양년도에 걸친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회계년도 말을 이유로 설계공기를 단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고이월 취지는 이해하나 년도말에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체결을 억제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등으로 익년도에 공사를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5. 재산관리 불합리

공유재산의 취득시 장부가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표시하고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의 증가란에 계상 표시한 후 잡종재산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잡종재산의 증감액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의 감소로 처리, 공유재산의 증감내역을 적정히 표시하지 아니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특별회계 >

세출부분 결산은 예산현액 2,793억 8,220만 2천원중 2,275억 7,250만 1천원이 지출되어 81.5%가 집행되었는바, 의료보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대청호대책등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인 공영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94년도 28.5%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결산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은 공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여야 하나, '95년도 2,853만 2천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 사료됨.



## 9. 주요지적사항

○ 없음.

## 10.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가결

##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 부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부.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 1부.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 1부. 끝.